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15 선고 2021나27880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15 선고 2021나27880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13 선고 2019가단5063801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한국무역보험공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

담당변호사 송명근

피고, 항소인 1. B

2. D

변론 종결 2021. 11. 17.

판결 선고 2021. 12. 15.

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4. 13. 선고 2019가단5063801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제1심판결 첨부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1/10 지분에 관하여, 피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8. 6. 19.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, 피고 D는 피고 B에게 2018. 6. 21.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접수 제299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(이 사건 공동피고 C는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기한 내 기일지정신청이 없는 이상 항소취하 간주된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 인용

피고들은 아무런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고,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최규연

판사최태영

판사심재남

별지